

2022. 4월 반사회 홍보자료

연번	제 목	담당부서
1	「제16회 부산가족축제」 개최	여성가족과
2	비양육부모-자녀간 면접교섭서비스 「마주봄」 안내	여성가족과
3	한부모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사업 안내	여성가족과
4	60세 이상 연령층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안내	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
5	3·15 의거 진상규명 신청·접수 안내	인권노동정책담당관
6	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	소상공인지원담당관
7	머물자리론(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) 모집 안내	청년희망정책과
8	「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」 캠페인 안내	금융감독원

1 「제16회 부산가족축제」 개최

◇ 5월 가정의 달을 맞아, 부산지역 다양한 가족 누구나 참여 가능한 '제16회 부산가족축제'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■ 행사개요

- 행사명 : 제16회 부산가족축제
- 행사기간 : 2022. 5. 16. ~ 5. 31. ★신청접수 : 5.9.~ (선착순 마감)
- 참가대상 : 부산지역내 다양한 가족 누구나
- 참가방법 : 홈페이지 개별신청 (<http://부산가족축제.kr/>) ▶ 오픈 : 5.9.
- 주요내용 : 가족프로그램(24개), 온라인 이벤트, 꾸러미 배부 등

행 사 마 당	내 용	운영주체	비 고	
1. 가족토크	가족가치 제작영상 시청후 댓글 달기/추첨	시센터	온오프라인	
2. 가족대회	가족 퀴즈대항전, 미션 수행 등		온 라 인	
3. 가족체험	㉠ 부산	구군 센터 (11개소)	온오프라인 (오프라인 7, 온라인 15)	
	㉡ 가족			8개(정서적 친밀, 가족관계 향상)
	㉢ 축제			7개(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)
4. 축제 소문내기 이벤트	행사홍보물 개인SNS 공유/선착순	시센터	온 라 인	
5. 축제 참여인증 이벤트	축제참여 사진·후기 공유/추첨	시센터	온 라 인	

* 프로그램별 상세내용은 부산가족축제 홈페이지 참조

- 주최/주관 : 부산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12개소
- 후 원 : 부산광역시
- ※ 문의전화 : ☎1577-9337 (부산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, 가족센터)

■ 협조사항

- 구군 홈페이지, 소식지(구보, 반사회보 등) 게재 홍보

2 비양육부모-자녀간 면접교섭서비스 「마주봄」 안내

◇ 부산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소중한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서비스 「마주봄」을 운영합니다.

■ 개 요

- 운영기간 : 2022. 4월~11월, 개별가족의 일정에 따라 진행
- 대 상 : 면접교섭서비스가 필요한 부산시민
 - ※ 면접교섭서비스란? 면접교섭(자녀-비양육부모간 교류)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의 개입으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- 참가비용 : 무료
- 내 용 : 개별 및 집단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

구분	지원횟수	이용대상	내용
개별 면접교섭	가구당 8회 (1회 60분) 가구별 일정 조율	양육부·모, 비양육부·모, 미성년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접교섭 갈등 중재를 위한 상담 • 협력적 부모역할을 위한 (비)양육부·모 상담 및 교육 • 안전한 공간에서 비양육부·모와 자녀의 만남 지원 • 비양육부·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평가와 개입
집단 면접교섭	6회 (8~11월)	비양육부·모, 미성년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양육부·모와 자녀 친밀감 향상 집단상담 • 1박 2일 가족캠프

■ 이용안내

-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, 방문접수, 우편접수 ▶ 상세내용 안내문 참조
- 제출서류 : 면접교섭지원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), 면접교섭 합의서(판결문 등)
 - ※ 신청서류는 양육자 및 비양육자 모두 제출 필요
- 신청문의 :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051-330-3456

■ 협조사항

- 구·군 홈페이지, 소식지(반상회보 등) 게재 홍보

자료제공 :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☎ 051-888-1604

참고 면접교섭서비스 「마주봄」 참여 모집 안내문

면접교섭서비스
부모와 자녀가
마주봄

부모와 자녀의 소중한 만남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
개별 및 집단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.

운영기간 : 2022. 4. ~ 11. (연중)
- 개별면접교섭 : 가구별 일정을 조율하여 전문상담사와 1:1 진행
- 집단면접교섭 : 8~11월(6회기) 진행

장 소 :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실 외

대 상 : (비)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

이용문의 : 051-330-3456(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)

면접교섭 서비스 내용

구분	지원횟수	이용대상	내용
개별 면접교섭	가구당 8회 (1회 60분)	양육부·모, 부양육부·모, 미성년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접교섭 갈등 중재를 위한 상담 • 협력적 부모역할을 위한 (부)양육부·모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• 안전한 공간에서 부양육부·모와 자녀의 만남 지원 • 부양육부·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평가와 개입
집단 면접교섭	기관 운영 일정에 따라 별도 안내	부양육부·모, 미성년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양육부·모와 자녀 친밀감 향상 집단상담 • 문화체험 프로그램

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

3 한부모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사업 안내

◇ 부산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에서는 복지서비스 종합정보 제공 및 정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에게 생활코디네이터(멘토)를 파견하는 「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」 사업을 운영합니다.

■ 개 요

- 운영기간 : 2022. 4월 ~ 11월 ▶ 코디네이터와 일정 조율하여 4회 지원
- 대 상 : 부산시 거주 한부모 30명
- 참가비용 : 무료
- 내 용 : 생활코디네이터와 이용자의 1:1 연계를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 정보 및 정서지원, 기관동행서비스 등

■ 이용안내

- 신청기간 : 2022. 4월 ~ 10월 ▶ 신청 기간 중 상시모집
- 신청방법 : 전화접수 후 신청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
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증빙서류
 - 신청서 : 홈페이지(busanhanbumo.or.kr) > 알림공간 > 자료실 서식 참고
 - 증빙서류(최근 3개월 내 발급)
 -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: 한부모가족증명서
 -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미발급 대상자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문의 :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051-330-3456

■ 협조사항

- 구·군 홈페이지, 소식지(반상회보 등) 게재 홍보

자료제공 :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☎ 051-888-1604

참고

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참여 모집 안내문



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

“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”

멘티 모집

☎ 330-3456

멘토와 멘티의 만남! 함께 해요.

“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'멘토'와 한부모 '멘티'의 1:1 연계를 통해 생활 맞춤형 정보 및 정서지원을 제공합니다.”

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한부모 30명	서비스기간 2022. 4. ~ 2022. 11. (가정 당 4회기) * 멘토와 일정 조율	신청방법 전화접수 후 신청서 제출 (051-330-3456) * 신청서는 홈페이지 > 알림공간 > 자료실 서식 참고 * busanhanbumo.or.kr
모집기간 2022. 4. ~ 2022. 10.	서비스장소 이용자 가정	

4 60세 이상 연령층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안내

◇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한 60세 이상 연령층 대상 4차 접종 시작 안내

■ 접종안내

- 접종필요성 :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시간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로 인한 중증·사망 방지
- 접종대상 : 3차 접종 후 **4개월(120일) 경과한 60세 이상 연령층** (1962.12.31. 이전 출생자)
 - ※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, 면역저하자는 3차 접종 후 3개월(90일) 후부터 접종가능
- 접종일정
 - ① 사전예약 4월 18일(월) ~ / 예약접종 4월 25일(월) ~
 - ② 당일접종 4월 14일(목) ~
- 백신종류 : mRNA(화이자, 모더나) 또는 노바백스 백신
 - ※ 사전예약시 백신선택 가능
- 접종장소 : 인근 위탁의료기관
- 예약방법
 - ① 전화예약 : 관할 보건소, 주민센터 또는 질병청 콜센터(☎1339)
 - ② 온라인예약 :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(ncvr2.kdca.go.kr)
 - ③ 잔여백신 : 의료기관 사전문의 후 잔여백신 접종 또는 SNS 잔여백신 예약

● 3회접종 완료 전·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, 본인 희망 시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.

자료제공 : 시민건강국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☎ 051-888-3285

참고

홍보 포스터

질병관리청 부산광역시

60세 이상 연령층

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을 시행합니다.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은 4차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.

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을 실시합니다

접종 대상 및 접종 간격

60세 이상 연령층* 중 3차접종 후 4개월(120일)이 지나신 분

*1962년 이전 출생자(해당 연도 포함)
*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 시설(정신건강 증진 시설 포함) 대상자와 접종 간격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면역저하자는 3차접종 후 3개월(90일) 이후부터 가능

백신종류

mRNA백신(화이자·모더나) 혹은 노바백스 백신

*mRNA 백신 금가연기 대상자이거나,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

<접종일정 및 방법>

당일접종 4월 14일(목) ~

사전예약 4월 18일(월) ~ 예약접종 4월 25일(월) ~

사전예약 방법 ① 사전예약 누리집(ncvr.kdca.go.kr) ② 전화 예약(1339, 보건의 주민센터) ▶ 대리예약 가능

당일접종 방법 ① 카카오톡-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 명단

2022 4월 14 25

4차접종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목표로 시행합니다. 특히,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.

5 3·15의거 진상규명 신청·접수 안내

- ◇ 「3·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(‘22.1.21.)에 따라 진상규명 신청·접수를 받고 있음.
- ◇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신청기간이 ‘22.12월 마감되므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민분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

■ 개요

- 신청기간 : 2022. 1. 21. ~ 12. 9.
- 접수기관 : 진실화해위원회, 시·도, 시·군·구
- 신청자격 : 3·15의거 관련 희생자,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「민법」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·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 자
- 대상범위 : 1960.3.15. ~ 4.13. 전후 마산지역에서 ‘3·15 부정선거’에 항거하여 발생한 3·15 의거 관련
- 접수현황 : 49건(2022.3.10. 현재)

■ 주요내용

- 접수방법 : 접수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
 - 진실규명신청서 1부,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,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),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
 -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(www.jinsil.go.kr)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- 문의처 : 진실화해위원회 3·15의거과
 - 주 소 :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
 - 연락처 : 055-246-8626~8

■ 협조사항

- 구·군 누리집 및 구·군보, 반상회보 등에 홍보자료 게재 및 접수처 안내

자료제공 : 민생노동정책관 인권노동정책담당관 ☎ 051-888-6467

참고

홍보 포스터

3·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(‘22.1.21.)

3·15의거로 인한 **희생자, 피해자**에 대해
진상규명 신청·접수 받습니다.

신청기간

2022. 1. 21. ~ 2022. 12. 9.
(공휴일 제외)

신청방법

- 우편, 방문접수
 - 진실화해위원회(서울/창원사무소)
 - 지방자치단체(시·도 또는 시·군·구)

신청자격

- 3·15의거 관련 희생자,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「민법」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·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 자

신청서류

- 신청서 1부
-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
-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-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예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제적등본,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
-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등

※ 신청 서식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(www.jinsil.go.kr)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문의처

-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
 - 주 소 :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
 - 전 화 : 055-246-8626-8
 - 홈페이지 : www.jinsil.go.kr



진상규명 범위

- 1960. 3. 15. ~ 4. 13. 전후, 마산지역에서 ‘3·15 부정선거’에 항거하여 발생한 3·15의거 관련

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, Republic of Korea

6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

◇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(건물주)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에서 재산세(건축물)를 지원하는 사업

■ 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 : '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('22년 1~11월 중)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

○ 신청요건

- 임대인 :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
- 임차인 : 소상공인(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등)

< 지원 제외대상 >

- ✓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
 - ▷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임원·사용인 등
- ✓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(별지6)에 따른 **세액공제 적용배제** 업종
 - ▷ 도박 등 사행행위업(관련 제조업), 학교법인, 금융업, 협회·단체 등
(단, 2호 과세유형장소(유흥주점 등)는 지원 대상 포함)

○ 지원내용 : 임대료 인하 내 재산세(건물분) 전액 지원(최소50만원* 최대200만원)

*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,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50만원 지원

예시)

재산세(건물분)		임대료 인하액	지원금액
200만원 초과	300만원	400만원	200만원
50~200만원	200만원	150만원	150만원
	100만원	120만원	100만원
50만원 이하	30만원	20만원	20만원
	30만원	60만원	50만원

○ 신청기간 : '22. 3. 28.(월) ~ 10. 31.(월) ▶ 필요시 연장(1개월)

○ 신청방법 : 사업장 소재지 구·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※ 구군 방문접수 병행

○ 지급방법 : 접수 후 익월 지급(계좌입금)

○ 문의처 : 16개 구·군 경제부서 및 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

※ 자세한 사항은 구군 및 읍면동에 비치된 홍보 리플릿 참조

■ 협조사항

○ 구·군 홈페이지, 소식지(구·군보, 반상회보 등) 게재 홍보

자료제공 :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☎ 051-888-4952

참고 1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

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

지원대상

-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('22년 1~11월 중)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

지원내용

- 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(건축물) 전액 지원(최소50만원, 최대200만원)
- ✓ 임대료 인하액 상생 시 관리비, 부가세 제외
- ✓ 재산세 50만원 이하일 경우,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50만원 지원
- ✓ 재산세 지원기준 : '21년(6월 이전 신청자), '22년(7월 이후 신청자)

신청요건

- 임대인 :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* 소유자
 - *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장기건물
- 임차인 : 소상공인 ▷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(단, 제조업 등 10명 미만) 등
 - *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신청

- 신청기간 : 2022. 3. 28.(월) ~ 10. 31.(월) ▶ 필요시 연장(1개월)
- * 지원예산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원칙(단, 온라인 취약계층 구군 방문접수 병행)
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구·군 홈페이지

지원 제외대상

- ✓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
 - ▷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, 임원·사용인 등
- ✓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(별지6)에 따른 **세액공제 적용배제** 업종
 - ▷ 도박 등 사행행위업(관련 제조업), 학교법인, 금융업, 협회·단체 등
(단, 2호 과세유형장소(유흥주점 등)는 지원 대상 포함)

제출서류

1.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(별지 1)
2. 임대인 신분증 사본(대리 신청 시 위임장(별지 2호) 및 통장 사본)
3. 상생협약서(별지 3호)
4. 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상공인확인서(임차인)
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별지 4호) ※ 임대인, 임차인 모두 제출
6. (해당 임대인만) 임대료 기인하분 증명자료(세금계산서, 입금내역 등)

부산광역시
BUSAN METROPOLITAN CITY

참고 2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

문의처

* 각 구·군별 접수 및 문의 * 평일 09:00 ~ 18:00(토, 일 제외)

구·군	담당부서	전화	구·군	담당부서	전화
중구	임대리검제과	600-4482	해운대구	임대리검제과	749-4474
서구	경제복지과	240-4477	사하구	경제진흥과	220-4476
동구	임대리검제과	440-4472	금정구	임대리검제과	519-4472
영도구	임대리검제과	419-4476	강서구	지역경제과	970-4475
부산진구	임대리검제과	665-4824(8)	연제구	임대리검제과	665-4476
동래구	임대리검제과	550-4016	수영구	임대리검제과	610-4475
남구	임대리검제과	607-4471	사상구	임대리검제과	310-4471
북구	임대리검제과	309-4481	기장군	임대리검제과	709-4471

* 사업 및 시스템 관련 문의 :
-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(888-4962, 4961, 4954)
- 부산경제진흥원 민생경제팀(600-1779)

착한 임대료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
코로나 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!

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

【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】

* 대상 : '21.6.30. 이전부터 영입목적으로 계속 임차한 경우
▶ 발급기관 : 소상공인진흥공단
▶ 발급방법 : 온라인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표홈페이지
→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(착출하단)
▶ 문 :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(70곳)에서 발급
▶ 준비서류

① 신분증 (임차인 또는 대리인 본인 신분증(직접 방문시)
※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, 위임장 계약증명서 및 위임장 추가서류 필요)
② 임대보증금영수증
③ 매출확인 (개인인쇄) 부가가치세과세증명원 (개인인쇄) 면세사업자증명원(소득계산서) (법인 인) 표준재무제표증명원(소득계산서)
④ 상사근로자 (있는 경우)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명, 부과현황
(없는 경우) 보험자격확인서

※ (준비서류 제출 생략) 임차인이 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②③④ 제출 생략 (단, 면세사업자 또는 2개 이상의 업종영위 사업자일 경우)
※ 소상공인 관련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지원공단(국번없이 ☎1357)으로 문의하세요

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확인서】

* 대상 : '21.7.1. 이후 영입목적으로 계속 임차한 경우
▶ 발급기관 : 중소기업부
▶ 발급방법 : 중소기업부 대표 홈페이지
→ 중소기업연합 정보시스템(8단)

※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발급 관련은 중소기업연합정보시스템(☎02-3215-2674)으로 문의하세요

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

착한 임대인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

부산광역시
BUSAN METROPOLITAN CITY

지원대상

소상공인 임대료 인하('22년 1~11월 중)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

신청요건

- 임대인 :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* 소유자
* 임대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상가건물
- 임차인 : 소상공인(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)
-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이며 (단, 제조, 광업, 건설, 운송업은 10명 미만)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발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(비영리제외)
(예) 도소매업 10억 이하, 음식업 10억 이하 등

지원 제외대상

-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
▶ 6층 이내 철축, 4층 이내 인적, 임원·사용인 등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(별지6)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
▶ 도박 등 사행행위업(관련 제조업), 학교법인, 금융업, 철화·단체 등 (단, 2호 과제유출장소(유출주점 등)는 지원 대상 포함)

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

업종분류	분류코드	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
가. 제조	C33402	양성개발(도박 등 사행행위)
나. 정보통신	J6821	게임 소프트웨어(도박 등 사행행위)
다. 금융, 보험	K64	금융
	K65	보험 및 연금
	K66	금융, 보험 관련 서비스
라. 부동산	L68	부동산업(부동산 관리업(8821), 부동산 중개 및 대리(8822))는 제외
미. 공공행정	O84	공공행정
	P851	초등 교육기관(학교)
	P852	중등 교육기관(학교)
	P853	고등 교육기관(학교)
	P854	특수·외국인 및 대안학교
사. 예술, 스포츠	R9124	사행시설
아. 철도, 단체	S94	철도 및 단체
차. 거주·주거생산	T97	가구 내 교통용동
재. 외국	U98	재난복구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
	U99	외국기관

지원내용

* 임대료 인하액 : 내 재산상(건축물) 전액 지원(※최소50만원, 최대200만원)
* 임대료 인하액 상향 시 고려해, 부가세 제외
*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,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50만원 지원 예시)

재산상(건축물)	임대료 인하액	지원금액
200만원 초과	300만원	150만원
	300만원	400만원
	200만원	300만원
50~200만원	200만원	200만원
	200만원	150만원
50만원 이하	30만원	20만원
	30만원	60만원
		50만원

※ 재산세 지원기준 : '21년(6월 이전 신청자), '22년분(7월 이후 신청자)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(원래, 온라인 위임계속 현상 방문접수 병행)
▶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구·군 홈페이지
- 신청기간 : 2022. 3. 28.(월) ~ 10. 31.(월) ▶ 필요시 연장(1개월)
※ 지원여야 신청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 :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(별지 1)
▶ 임대인 신분증 사본(대리 신청 시 위임장(별지 2호) 및 통장 사본)
※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: 위임장 및 위임 증명자료 (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)
- 상생협약서(별지 3호)
▶ 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상공인확인서(임차인)
▶ 임대료 보증 수납·이용 동의서(별지 4호) ※ 임대인, 임차인 모두 제출
▶ (해당 임대인만) 임대료 기한분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입금내역 등)

지급방법 및 절차

- 지급방법 : 접수 후 익일 지급(계좌입금)
- 지급절차 : 신청접수 → 서류 또는 원상상사 → 선정결과 통보(문자) → 지원금 지급 → 이행정점

7 머물자리론(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) 모집 안내

◇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「머물자리론(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)」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

모집개요

- 신청기간 : '22. 5. 16.(월) 09:00 ~ 6. 12.(일) 18:00
- 모집인원 : 500여명 (접수기간 내 모집인원 초과시 모집 종료)
- 지원대상 : 부산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 ~ 34세 무주택 청년(신혼부부 제외) 세대주
 - (대상주택)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.1% 이하
 - (소득기준) 본인(부부합산) 연소득 4천만원 이하
- 지원내용 : 대출 이자 전액 지원(본인 부담 이자 없음)
- 대출한도 : 최대 1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내)
- 모집방법 : 온라인 접수 (임대차계약 완료 후, 신청 가능)
- 상세안내 : 부산청년플랫폼(<https://www.busan.go.kr/young/index>) 공고문, 가이드 영상 등 참조 (부산청년플랫폼 내)
 - ※ 문의전화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어 “부산청년플랫폼 사이트” 적극 활용 요망
 - ※ 2분기 공고 및 관련 안내자료 ▶ 4월말 게시 예정

협조사항

- 구군 홈페이지, 소식지(구보, 반상회보 등) 게재 홍보
- 각종 자생단체, 유관기관 회의시 사업홍보 등

자료제공 : 청년산학창업국 청년희망정책과 ☎ 051-888-4614

8 「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」 캠페인 안내

◇ 금융감독원은 4.11.~5.20.(6주) 기간중 소금융권과 공동으로 「숨은 금융자산* 찾아주기」 캠페인을 실시합니다.

*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자산으로, '21년말 기준 약 16조원에 달함

■ 캠페인 대상 금융자산 및 주관기관

휴면금융자산	장기미거래 금융자산	주관 기관
휴면예금 요구불예금·저축성예금 중 청구권 소멸시효(5년)가 완성된 이후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	개인이 보유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예·적금, 보험금, 신탁 (압류, 비실명계좌 등 지급곤란 계좌 및 휴면예금 등 제외)	서민금융 진흥원, 금융 결제원 은행연합회, 저축은행 중앙회 생명·손해 보험협회
휴면보험금 보험계약 실효·해약(만기) 후 3년(15.3월 이전 2년)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(해약환급금·만기보험금)		금융투자협회, 금융결제원
휴면성증권 6개월 이상 매매 또는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 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이하 계좌		한국예탁결제원
실기주과실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가고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및 배당주식		여신금융협회, 금융결제원
그 외 숨은금융자산 미사용카드포인트 신용·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서 유효기간(5년) 경과 후 소멸		여신금융협회, 금융결제원

■ 숨은 금융자산 찾는 방법

☑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·환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·모바일을 통해 **先 조회** 후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.

☑ 특히,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(fine.fss.or.kr)에서는 모든 숨은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합니다.

※ 보다 자세한 조회·환급 방법은 **붙임자료를 참고**해주세요

■ 협조사항

○ 구·군 홈페이지 팝업창, 소식지(구보, 반상회보) 게재 등 홍보

자료제공 :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기획팀 ☎ 051-606-1712

붙임1 숨은 금융자산 종류별 조회 및 환급 방법

□ 장기미거래 금융자산

- (조회) 「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」(payinfo.or.kr)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·적금, 신탁(휴면성신탁 포함), 증권사 투자자예탁금, 펀드·ISA, 외화예금,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가능

- 계좌통합관리서비스(payinfo.or.kr) 접속
 → ① 내계좌한눈에 → 은행권, 제2금융권, 증권사 중 택일
 → ② 내카드한눈에 → 포인트현금화 택
 ☞ 본인 인증 등을 거쳐 필요한 정보 조회

※ 미청구 보험금의 경우 「내보험 찾아줌」(cont.insure.or.kr, cont.knia.or.kr)에서 조회·청구 가능

- (환급)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,

-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「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」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*하고 해지 가능**

* 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만 환급 가능하고,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등 투자재산 없이 예탁금만 보유한 계좌만 시스템을 통해 환급 가능

** 압류 등으로 지급정지 되어 있는 경우 일부 환급 제한 가능(이하 동일)

□ 미사용 카드포인트

- (조회)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
- 여신금융협회 접속(cardpoint.or.kr) → 조회/입금/기부
 ☞ 본인 인증 등을 거쳐 필요한 정보 조회

- (환급) 해당 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·계좌입금 가능

□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

○ (조외) 서민금융진흥원의 「휴면예금 찾아줌」에서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 조회 가능

- 은행연합회, 생손보험회,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

- 서민금융진흥원 「휴면예금 찾아줌」에 접속(sleepmoney.kinfa.or.kr)
 - ☞ 본인 인증 후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계좌 조회
- 은행연합회 「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」에 접속(sleepmoney.or.kr)
 - ☞ 본인 인증 후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계좌 조회
- 생·손보험회 「내보험 찾아줌」에 접속(cont.insure.or.kr, cont.knia.or.kr)
 - ☞ 본인 인증 후 휴면보험금 계좌 조회
- 저축은행중앙회 「휴면예금조회서비스」에 접속(sleepmoney.fsb.or.kr)
 - ☞ 본인 인증 후 휴면예금 계좌 조회

○ (환급)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, 서민금융진흥원,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가능

□ 휴면성 증권

○ (조외) 금융투자협회의 「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」 또는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, HTS, MTS*에서 조회 가능

* 홈트레이딩시스템(Home Trading System),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(Mobile Trading System)

- 금융투자협회 접속(kofia.or.kr) → 투자자지원센터 → 휴면성증권계좌 조회
 - ☞ 증권회사별 휴면성증권 계좌 조회시스템이 바로 링크되어 있어 접속 후 확인

○ (환급)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,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, HTS, MTS를 통해서 환급 가능

□ 실기주과실(果實)

○ (조외)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
- 한국예탁결제원 접속(ksd.or.kr) → e서비스 →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
 - ☞ 해당 주권의 발행회사, 주권번호 등을 입력한 후 실기주과실 유무 조회 확인

○ (환급) 해당 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

붙임2

캠페인 홍보 포스터

전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
4월 11일 ~ 5월 20일

혹시 나에게도 숨은 자산이?! 내 계좌에서 잠자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!

QR코드를 찍어보세요!

손쉽게 숨은 금융자산을 찾는 방법!

*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장기 미거래 금융자산	내계좌 한눈에	PC	파일 홈페이지 (line.fsa.or.kr) 접속	내계좌 한눈에 클릭	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	계좌조회 및 잔고이전 (미사용계좌폐지)
		모바일	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설치	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등록	계좌 조회	계좌조회 및 잔고이전 (미사용계좌폐지)
휴면 금융자산	잠자는 내돈찾기	PC	파일 홈페이지 (line.fsa.or.kr) 접속	잠자는 내돈 찾기 클릭	조회항목 선택	본인인증 후 조회
		모바일	파일(모바일금융감독원) 어플리케이션 설치	잠자는 내돈 찾기 클릭	조회항목 선택	본인인증 후 조회